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7호)

심 사 보 고 서

1998. 6.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6. 1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8. 6. 11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8. 6. 19 상임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과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코자 함.

3. 주요골자

-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명칭 정비(안 제1조)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보완(안 제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법령 조항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중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 정의는
- 답 : 주변지역주민의 전체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결방안 채택
- 문 : 특별지원사업비의 세입현황은
- 답 : 주변지역주민 협의지연과 IMF 한파 영향으로 세입 미조치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8. 6.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